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9. 6. 18(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토론자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석우 前통일부차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문의
홍일표의원실(02-788-2727)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Program

◆ 주 최 : 국회인권포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 일 시 : 2019년 6월1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세부일정

시간	행사	참석자
2:00~2:05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2:05~2:08	내빈소개	
2:08~2:15	개회사	홍일표(국회인권포럼 ·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의원)
2:15~2:25	축사	참석내빈
2:25~2:30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2:30~2:45	호소문 낭독	탈북민
2:45~3:15	발제 및 토론	김태훈(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석우(전 통일부 차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
3:15~3:25	질의응답	
3:25~3:30	폐회 및 장내정리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Contents

개회사

홍일표(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07

호소문

탈북민 09

발제 및 토론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와 대책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19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대책
김석우(前통일부차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33

강제북송 탈북자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 41

개회사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홍일표(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인권포럼 및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 홍일표 의원입니다.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하여 함께 준비해 주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님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주시며 강제북송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혜안을 모아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회인권포럼은 탈북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정치범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며 중국은 1982년에 가입한 난민협약상 탈북난민을 보호하고 강제송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올해 초 한국행에 나선 탈북민 3명이 베트남까지 갔으나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하여 중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인권포럼은 우리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며 강제송환을 막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또 탈북민 20명이 중국 선양과 백산 등지에서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송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12살 어린 아이와 중병을 앓고 있는 70세 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포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고문,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으로 목숨까지 잃게 될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도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다 보니 북한이 꺼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탈북민은 북한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도적 인권 탄압과 유린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오려는 우리 국민입니다. 탈북민들에게 있어서 강제북송은 죽음과도 직결됩니다. 정부는 강제북송을 막고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앞장 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를 위하여 귀한 발걸음 해주신 국회, 학계, 언론,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 소 문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존경하는 국회 의원님들

저는 몇년전에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온
사람 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 까지 오게 된것은 얼마 전
5월 25일 점심 12시경 중국 심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저의 누나를 살리고자
국회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부탁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게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부탁 드릴수 있는 곳은 다 찾아가 봤습니다.
청와대도 가보고 외교부, 미국대사관 까지 가서
도와줄것을 부탁드렸지만 아직도 저의 누나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허풀이 할뿐입니다. 저는 더이상 부탁드릴
곳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저의 누나를
살려 주십시오!
저의 누나는 죄인이아닙니다. 배고파서 온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발 부탁
드립니다 <북송만은 막아주십시오!>
저의 누나는 북송된다면 살아날길이 없습니다.
국회가 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제발 제발
도와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호 소 문

저는 2014년 북한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저는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다가 중국을 경유하던중 중국공안에 체포된
저의 어머니 (67세) 와 아들 (18세), 딸 (13세)을 구출하고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5년전 홀로 한국에 와서 마음편히 자유롭게 살고있는것이 마음에 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싶어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아
2019년 5월 11일 가족 모두를 중국으로 탈북시켰습니다.
중국에 도착한후 제3국으로 이동하던중 2019년 5월 21일 중국 광시성
난닝근처에서 중국공안에 잡혔다는 소식을 브로커로부터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저의 끈질긴 설득과 오랜 회유끝에 탈북하다보니 북한의
생활기반 모두를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만약 저의 가족들이 강제북송되면
북한에 계시는 어머니와 어린 아들, 딸들의 법적인 처벌에서 자유로울수
없을뿐 아니라 그들이 모두 감내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것입니다. 또한 저의 어머니는 몸도 연로하시고 뇌출혈, 당뇨 등
두통을 동반한 합병증 등으로 상시 진통제 등 각종약을 복약하지 아니하면
거동조차 할수 없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저와의 통화에서 한번만 저를 꼭 안아보면 여한이
없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의 아들과 딸도 나이가 어려 보호자가 없으면 살아가기 가혹한 환경에
놓일것입니다.
평소에 의사가 되어 할머니를 치료해 드리겠다던 아들, 인기 배우가 되는것이
꿈이라던 딸, 이 아이들이 그리운 엄마품에 안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가족들이 중국공안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우리가족이 모여 함께 살자던 어머니와 아들, 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
손놓고 포기할수 없어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저의 가족 꼭 좀 살려주세요, 북송만은 제발 막아주세요.
저의 가족 죽음에서 구해주세요.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있는 탈북민입니다

자유를 찾아 십여년세월 온갖고생 다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고통과 불행을 글로써 말로써 표—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험난한 세월속에서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과행복하게 살 날이오리라는 희망만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느하루도 한 시각도 잊을수가 없던 아들에게 우연히 소식이 닿아 이 죄많은 엄마를 찾아오던중 지난5월25일 심양에서 중국공안국에 잡혔습니다.지금 생신조차 알수없는 제 아들이 북송되면 다시는 살아서 볼수없습니다

북한정부가 탈북자들을 수용소에보낸다는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때 한국으로 가다 잡힌 사람들이 처형되는것을 다 보았기에 제 아들의 불행을 차마 보고 있을수없습니다

자식이 엄마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죄가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제 나라로 오는데 무슨 죄란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각도 감방에서 두려움괴 공포에 떨며 울고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습니다

제 아들의 북송을 막아 주십시요

아직 채 피여나지도 못한 어린 청춘입니다

엄마와 단 하루라도 살아보는것이 소원이라며 단 하루를 살아도 누구의 감시도 받지않고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던 아들이였습니다

불쌍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요

더는 저희들의 이 아픈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생사기로에 놓여있는 탈북민들을 구원해주십시요

그들도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있는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냥 듣고만 보고만 있으실겁니까?

벌하시려면 이 어미를 처벌하고 죄없는 제 아들 구원해주십시요

중국에 잡혀있는 그들을 구원해주십시요.

탈북자 북송 반대 호소문

2013년에 탈북하여 남편과 세 아이들이랑 제주도에서 현재까지 잘 살고 있는 새터민 이**입니다.

2019년 5월초에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고 있던 제 여동생(이**)이 다른 가족 3명과 5월 21일 중국 난닝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혀 중국 안산구금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위소식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브로커를 통해 전해 들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제동생을 포함해서 일가족 3명은 언제든 북한으로 나갈 수 있는 북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양강도 혜산시에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여동생) 과 함께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1980년대 말에 태어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대적어려운 환경속에서 쭉 크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장마당)에서 매일같이 일년 365일 힘겨운 노동으로 네 식구의 하루하루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엄마가 주로 하는 장사는 기계국수 장사였는데(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아주 어릴 적부터 기억입니다.) 하루에 옥수수 30k 가루를 내어 (빻는다) 보드라운 채에 손으로 걸려 기계에서 국수를 내려 예쁘게 1k씩 포장하여 시장에 나가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현실은 전기도 제대로 없어서 전기가 오는 곳마다 찾아다녀야 됐고 그때 제 여동생은 2살이어서 엄마가 내내 없구 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국수 판매해야 하고 저녁에는 국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엄마뿐만 아니어서 순서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얘기 엄마라는 이유로 늘 양보 해 줬다고 들었어요...
십여년 넘게 하루와 같이 궂은 비, 찬바람부는 그곳에서 변함없이 이악하게 장사해온 엄마 덕에 우리가족은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빠를 한번도 제대로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고 일년을 하루와 같이 주정하고 분이 안 풀리면 폭행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우리자매들은 매도 수 없이 맞았습니다. 이유는 엄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돈을 제대로 못보는 너 때문에 창피하다고, 그래서 딸들인 자식들도 보기 싫다고 등... 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제대로 아빠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도 자기 잘못은 일도 없다는 아빠를 우리는 그저 아빠인줄 알았습니다.

내가 중학교쯤 이었을 때 하루는 엄마가 나를 보며 엄마친구 지인이랑 같이 점(곳)을 보고 왔는데, 내가 인생말년의 팔자가 그렇게 좋다더라, 자식덕에 아주 호강을 한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 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웃는 모습이 이렇게 이쁘고 편한 얼굴인줄 우리엄마도 웃을줄 아는 사람이라 느꼈습니다.
엄마는 살면서 우리들을 키우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나는 몸과 마음이 고생해도 내 새끼들이 하루에 한 끼라도 굶을 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다고 그래서 내가 힘든 줄 몰랐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날 엄마와 나는 서로 껴 안고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그날 엄마와 맘 속으로 약속 했습니다. 엄마가 그랬듯이 이제는 내가 우리가족 끼니 걱정 안하게 돈을 마니 벌어야겠다고 그래서 엄마께 효도하겠다고 약속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은 압록강 국경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평생을 착하고 순진하게 장사해온 엄마는 국경지역에서의 밀수라는 장사를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서로가 신고하고 이간질하고,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 남는 그래서 어쩌다 운이 좋은 님이 정글에서 보물 찾아 가지는 아주 험난한 삶의 터전 이었습니다.
한번은 밀수할 물건을 집에 쌓아두었는데 못된 사람의 신고로 경찰들이 집 수색에 들이 닥쳐 왔습니다.
개인의 재산인데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물건은 전부 압수 당했고, 엄마까지도 끌려가 심하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지요. 우리는 하루 아침에 엄청난 빚쟁이가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하루 한끼씩 먹는 것도 힘둘 정도 였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것 뿐인데 오히려 엄마와 우리 가족은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습니다.

밀수를 하면서 얻은 정보는 한국에 가면 나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마니 모은 다는 등, 적어도 지금처럼 애써 돈을 벌어 경찰복이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꼴은 안 보며 살 수 있다는 정보 였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한국행은 아직은 어린 나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물론 엄마와 가족과는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았지요. 당연히 반대 할거니까요. 그럼에도 살아야겠다는 욕망과 나는 충분히 일을 해 돈을 벌수 있다는 야망으로 압록강을 건너 브로커를 통해 내가 가는 몸값은 열심히 돈 벌여 갚겠다는 이자까지도 전부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한국행에 성공 했습니다.

나는 얼른 돈을 벌어 엄마와 여동생을 지옥같은 그곳에서 탈출시키려고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마음 같지 않았고 엄마와 동생과의 약속은 한해한해 늦어만 갔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뒤로 평생을 자기 몸 생각하지 않고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엄마는 위암에 걸려 올해 년초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기전에 지인의 손에 동생을 데려가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말년인생을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동생을 내게 맡긴 엄마의 간절한 모습이 너무너무 생동하게 보여지는데 슬픔도 잠시 험한 곳에 혼자 남은 동생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 결국 대출을 받아 동생을 탈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중국의 난닝성 근처에서 공안에 붙잡혀 북송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온갖 불법과 뇌물이 판을 치는 지옥같은 북한으로 북송 되지 않게 목소리를 내어 주세요 !!!
똑 같은 사람인데,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차별하는 나라 북한 !! 이런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세상 발아래 짓밟히고 굶주리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허덕이는 불쌍한 사람들!!!

사람이 한번 뿐인 인생 하루 세끼 정상적으로 먹으면서 사람답게 살고싶은데 암흑 같은 저 북한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살겠다고 웨치고 몸부림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한번만 눈낄을 주시고 관심 가져 주세요!!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우리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 주세요...

북송만은 안된다고 간절히 또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 북송만은 막아 주세요!!!

대한국민 여러분 !!

나아가 전 세계 여러분 !! 도와 주세요

북송만은 안 된다고 목소리 내어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북송만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발제 및 토론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와 대책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와 대책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1. 서 론

지난 4월 27일[1], 5월 21일[2]에 각각 9세와 12세 아이가 포함된 7명, 4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음. 또한 5월 25일[3]에도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추가로 체포되는 등 탈북민 20여명이 강제북송의 위기에 처해 있음[4].

남한에 있는 이들 탈북민 가족들은 북한에 있을 때 남한으로 탈북하려다가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외교부, 유엔 서울사무소 등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석방을 호소하고 있음.

이미 2017. 7. 2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행을 시도하던 일가족 5명이 7. 15.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 북한으로 압송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마시고 모두 음독자살했다고 보도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음.

같은 해 10. 28.경 한국 입국을 시도하던 10대~40대 탈북민 5명이 중국 지린 성 바이산시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중국변방대(국경경비대)에 체포되었는데, 이들 5명도 결국 기약 없이 북한으로 강제북송.[5]

---

1) BBC코리아, 북송 위기 탈북자 가족 '9살 제 딸의 강제북송을 제발 막아주세요', 2019년 4월 30일 https://www.bbc.com/korean/news-48036756
2) VOA, [특파원 리포트] 중국서 최근 탈북민 8명 체포… 13세 소녀 등 일가족 3명 포함, 2019년 5월 30일 https://www.voakorea.com/a/4938608.html
3) DailyNK, "지난주에만 8명"…중국 당국, 또 탈북민 체포, 2019년 5월 31일 https://www.dailynk.com/%EC%A7%80%EB%82%9C%EC%A3%BC%EC%97%90%EB%A7%8C-8%EB%AA%85-%EC%A4%91%EA%B5%AD-%EB%8B%B9%EA%B5%AD-%EB%98%90-%ED%83%88%EB%B6%81%EB%AF%BC-%EC%B2%B4%ED%8F%AC/
4) 12세 소녀 등 탈북자 20여명 중 공안에 체포...북송 위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9/201906090194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47298&code=11131100&sid1=soc (2017. 11. 10 자 국민일보 기사)

그밖에도 한미 당국이 2016년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선언을 한 이후 한국행 길에 올랐던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거나 강제북송을 대기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었음.[6]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자신이 입수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파악한 1년간의 강제송환자만 51명에 달하고, 특히 2017. 7.~ 8.까지 1 달 동안 이미 41명의 탈북민들이 집중적으로 강제북송 되었다고 밝힘.[7]

북한은 2017년 11월 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실시하는 국가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유효한 여행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returned) 여성의 수는 6473명'이고, 이들은 해외 체류 중 살인 미수와 마약 거래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밝혔으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견해가 다수(2017. 8. 4. 미국의소리 방송 VOA, 2017, 8. 5. 조선일보)[8].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을 엄격히 봉쇄하여 2012년도부터 탈북민 숫자가 1,000명대로 급격하게 줄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탈북행렬이 이어져서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 2016년 1,418명,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 등 2019년 3월 말 현재 국내 입국 탈북민이 32,705명에 이르고 있음.

2. 북한의 북송 탈북민 처벌

국외 이동의 자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유는 자국을 떠날 권리와 자국으로 돌아 올 권리임.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B규약)' 제12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제4항은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함을 규정.

북한은 위 조약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을 떠난 사람은 비법국경출입죄와 조국반역죄로 구분하여 처벌.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까지 부과(제221조). 조국반역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노동

6) 조선일보 2017.08.10 "한국 정부, 시진핑에 탈북자 석방 요구해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0/2017081000020.html
동아일보 2017-08-17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사드 보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http://news.donga.com/home/3/all/20170817/85856916/1#csidx2c5356dacd5f6fd848d10b985b4c31e
7) 뉴스1 2017. 7. 24. http://news1.kr/articles/?3056867
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5/2017080500168.html

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제63조).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 변방대에 구금돼 있다가 북한 국경 관할 국가보위성 구류장, 집결소, 출신지 관할 인민보안서(또는 관할 지역 국가보위성 구류장)으로 순차적으로 이송, 구금되고, 주로 인민보안서에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 그 동안의 구금기간은 대체로 6개월 전후인데 재판을 받기 전까지 폭행, 장기간 구금, 부족한 식량 제공, 강제노동, 강제낙태나 영아살해 등 다양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9)]

비법국경출입죄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 수용. 영양 및 위생상태 불량으로 기아와 질병으로 대규모가 사망. 전거리교화소에서 2010년 7월과 8월에 매일 3-4명의 여성 수형자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도 2-3일에 1 명씩 사망하였고, 또 개천교화소에서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약 3000 명의 남녀 수형자 중 약 1500 명이 사망.[10)]

북송된 탈북민이 기독교와 접촉했거나 한국행 기도는 조국반역죄로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극형에 처해짐.

또한 북한당국은 이러한 법적인 제한 이외에 불법월경을 막기 위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경지대에 울타리와 장벽을 세우고,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안전보위부는 국경통제의 지휘권을 조선인민군 국경경비사령부로부터 넘겨받아 빈번하게 보초를 변경.[11)]

북한은 2010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를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는 내용의 '0082지침'을 변경지역에 하달. 특히 북한 김정은은 2014년 1월 "국경경비대 전체 군인들은 실탄을 착용하고 비법월경, 탈북, 간첩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사살)을 가해야 한다"고 지시.[12)]

9) 2017. 12. 10. [주간조선] 강제북송 겪은 탈북민들 증언… "창고에 쌓아둔 시체들 어디론가 실어나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8/2017120802055.html
10) 대한변협 2016. 3.,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S "THREATS TO THE PEACE" - Occasional Repor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for 31st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pp 15-6
11)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196~197면
12) 조선pub, "김정은, 반역자(탈북자)들에 무자비한 징벌(사살) 명령"; COI 보고서, 108면; 대한변호사협회, 『2014 북한인권백서』, 292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 지역에 철조망을 세우고 사람 모형의 사격 표적판까지 세운 것으로 4월 22일 확인. 대북 제재 장기화로 탈북하려는 주민들이 증가하자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것이란 분석(2019. 4. 23. 조선일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이 일반주민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인 해외여행금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불법월경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자유권규약 제6조 위반이라고 판단.

3.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국 헌법 제32조에 의하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면서 탈북민은 경제적 이유로 입국했으므로 난민이 아니라며 강제 송환 정책을 강행.

중국은 북한과 1960년 ‘북·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범죄인인도협정)’, 1986년 ‘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변경지역관리의정서)’를 체결. 1998년 개정된 위 의정서 제5조는 “범죄자 처리 문제”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합의를 수립하고, 국경을 넘어 도망쳐 국가안전을 교란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와 관련한 모든 위험성에 대하여 서로 알려줄 의무를 규정. 양 측 모두 상대방 국경 쪽의 안전 및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또는 자료를 상대방 국가에 제공함.[13] 또한 중국 길림성은 1993년 ‘길림성 변경관리조례’를 제정.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을 고발하도록 하고 은닉하는 자들은 처벌하며, 고발이나 필요한 정보 제공 시 금전 보상을 함. 정보 제공이 신속하고 정보에 관련된 불법 월경자가 많을수록 보상 규모도 커짐. 중국 공안은 중국 체류 북한 주민들까지 고용하여 한국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밀고하도록 하고 있음.

13) 위 COI 보고서 p 228

중국은 유엔난민기구(UNHCR) 베이징 직원에게 북한 출신자를 포함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UNHCR와 합의하였으나 이를 무시[14].또한 북한 주민들이 보호 또는 망명을 요청하기 위해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특히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대한 접근을 막아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한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한국 시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15]

2015. 9. 23. 중국 공안, 북경 주재 한국 대사관 들어가려는 탈북민 체포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 이행업무를 맡은 관리들은 대부분 강제송환자들이 북한에서 당면하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16] 중국 관리들은 북한 당국에 체포 정황, 체포 장소, 중국 내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체포한 북한 주민의 중국 내 생활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 이러한 정보는 북한 당국이 강제송환자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사용. 한국 국정원에 협조했다고 생각되는 주민들은 북한에서 처형되며 기독교 선교사들과 관계한 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수용소로 이송. 중국 관리들은 송환자의 목적국이 한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북한 당국에 건네는 서류상 도장의 색을 달리하여 표시. 중국 당국은 북한 당국에게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물품을 전달받은 경우도 있음.[17]

4. 재중 탈북민의 체류 실태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못한 채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은 발각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지 모른다는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중요한 보건 서비스 등

14) 위 COI 보고서 p 225
15) 위 COI 보고서 pp 221-222
16) 위 COI 보고서 pp 222
17) 2014 유엔 COI 보고서 p 227

에 접근할 수도 없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인신매매를 통해 강압적 환경 속에서 강제결혼 또는 매춘을 하게 된 여성 및 여아들에게 특히 현저함.[18]

인신매매된 여성들과 여아들은 대개 인신매매 전후에 성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 및 성폭행, 감금을 겪게 되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지만 대다수 허가 없이 거주하므로 경찰 또는 국가 보안 당국에 도움을 구할 수 없음. 특히 여성들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출산 과정 혹은 산후조리 기간 동안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함. 자신이 아이의 주요한 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예방접종 또는 기타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도록 할 수가 없음.[19]

중국의 의무교육법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가 당국에 발각되어 강제송환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이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있음. 이들은 아동권리협약 제24조와 제28조의 규정과 달리 보건과 교육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고, 어머니가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면 부모 없이 살아야 함. 이는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지 않을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 위반.[20] 장기간 중국에 머문 일부 탈북여성들은 호구를 얻고 그 아이들 역시 호구를 얻는 경우가 있고, 뇌물을 호구를 얻는 경우도 있으나 소수에 그침.[21][22]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반인권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금지. 2000년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인신매매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위협 혹은 폭력이나 기타의 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활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전 혹은 혜택을 주고받는 행위 등에 의해 ‘착취(exploitation)’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 행위”를 통칭. 인신매매는 밀입국 알선(human smuggling)과 달리 불법적인 국경이동

18) 2014 유엔 COI 보고서 p 240
19) 2014 유엔 COI 보고서 p 241
20) 위 COI 보고서 p 243
21) 위 COI 보고서 p 242-4
22)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들이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출신 여성들로부터 태어난다고 추정. 이들의 아이들도 중국 국적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가지나 출생 등록을 하면 불법 체류자인 어머니의 신분이 들통 나 강제송환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 권리를 부정당하고 실질적으로 국적이 없는 상태가 됨. 이런 관행은 모든 아이들이 법적인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위반하는 것.

주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착취가 이루어지고,[23] 특히 인신매매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는 북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의 한 형태.[24]

중국에서 거래된 북한 여성이 강제결혼 뿐만 아니라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음란 화상채팅사업, 한국인 대상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에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 최근 밀수를 하던 중국 업자들이 인신매매까지 관여.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등은 여전히 인신매매가 활발하지만 온성군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짐.[25]

월급 못 받고 8년간 감금…'사이버 성노예' 탈출한 北 여성 2019. 6.11. SBS 방송

"과거 농촌으로 팔려가는 탈북 여성이 많았다면 최근엔 매춘 특히 사이버 섹스 시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탈북 여성의 수가 늘고 있다."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서 적게는 30위안(한화 약 5000원)을 받고 매춘을 한다.” “탈북 여성을 이용한 중국 내 섹스 산업의 연간 이익은 최소 1억 500만 달러로 파악된다.” 영국 인권단체 '코리아 퓨쳐 이니셔티브(Korea Future Initiative)가 5월 20일 발표한 '성 노예 :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과 사이버 섹스, 강제 결혼' 보고서에 담긴 내용. 이번 보고서는 2년에 걸쳐 탈북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실태 조사에 기반했다고 함.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는 회원국들에게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의무로 부과. 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국가들로 하여금 아동들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

23) 통일연구원 2017 북한인권백서 pp 403-404
24) 2014 유엔 COI 보고서 p 229
25) 통일연구원 2017 북한인권백서 pp 403-408

5. 평가 및 개선방안

가. 평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 제59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그 이래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매년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에 대하여 송환되어 온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금지를 촉구하고,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부터는 각국에 대하여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하여 왔음.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 2. 17.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특정하여 중국으로 월경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난민 또는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26] 최근 2019. 3. 22.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A/HRC/40/L.18)에서도 아래와 같이 강조.

6. Reiterates its deep concern at the commission's findings concerning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abroad and made subject to sanctions, including internment, torture, cruel, inhumane and degrading treatment, sexual violence, enforced disappearance or the death penalty, and in this regard strongly urges all States to respec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o treat humanely those who seek refuge and to ensure unhindered access to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ith a view to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ose who seek refuge, and once again urges State parties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thereto in relation to person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re covered by those instruments;

중국이 1982. 9. 24. 가입한 '난민지위협약'은 제33조에서 "체약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규정. 비록 '난민'이란 단어가 사용됐지만 여기서 지칭한 '난민'은 난민

26) 위 COI 보고서 p 226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즉 '비호를 구하는 자(asylum-seeker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됨.

중국이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에도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규정.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그 대상이 난민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또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해석상 '고문'은 물론이고 정도가 덜한 기타 '학대행위'에도 적용됨으로써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음. 또 난민지위협약 제33조에서 금지한 '추방' 및 '송환'에 더해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범죄인 '인도'도 금지하고 있음.

중국이 북한과 1986년 체결하고 1998년 개정한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에는 '주민의 불법월경 방지업무'(제4조), '범죄자 처리문제를 (북한과) 상호 협력(제5조)', '범죄인, 불법월경인 등의 인계 절차(제9조 2항)' 등이 규정돼 있으나, 이러한 조약상 의무는 그 구체적 내용이 국제법상 '충돌이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범'에 위반된다면 원천적으로 무효. 고문금지 및 관련 강제송환금지는 국제법상 대표적 강행규범.[27)]

중국은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발생한 중국계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에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난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도 위반하는 것.[28)]

그 외에도 중국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 자유권규약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29)]. 또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어린이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짐.[30)].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아동이 의사에 반하여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27) [기고/조정현]中, 국제법 따라 탈북자 처리한다고?
http://news.donga.com/3/all/20120301/44430543/1#csidx627d4c9b13407f6bcbc3f5b9862023c
28) 김석우[시론] 중국은 가입한 국제 인권협약들 지켜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3/2012022301801.html?Dep0=twitter&d=2012022301801
29)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30) Every child shall have, without any discrimination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or birth, the right to such measures of protection as are required by his status as a minor, on the part of his family, society and the State.

해야 함.[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한으로 탈북한 가족 구성원과 결합하기 위해 중국을 경유하여 탈북하는 북한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함으로써 위와 같은 가족결합권을 침해. 나아가 북한이 탈북과정에서 국경지대의 도강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통제하는 것은 생명권(자유권규약 제6조)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자유권규약 제9조)의 정면 부정.

나. 개선방안

(1) 국민의 인식 전환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 인권의 부재에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극히 저조함. 상대적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가 기울이는 탈북민 등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나 우리 국민들이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경과한 일본 위안부 문제에 기울이는 뜨거운 관심과는 대조적.

탈북민의 강제북송 문제에 단순히 단지 ‘안됐다’ ‘불쌍하다’는 정도로 인식할 게 아니라 ‘미리 온 통일’로서 우리와 같은 이웃이 겪는 고통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탈북가족상’ 세우기 운동 등을 통하여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전 국민적 캠페인을 벌릴 필요가 있음.

(2) 대통령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정부는 2017년 10월 말 중국의 사드보복을 풀기 위한 한·중합의 시 중국에 대하여 이른바 3불(不)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중대한 인권현안인 재중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대북 압박 국면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3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uch determination may be necessary in a particular case such as one involving abuse or neglect of the child by the parents, or one where the parents are living separately and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3)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률 시행과 보완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도 3년이 넘었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 하고 있음. 전 정권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재단의 상근 이사직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인권재단이 파행된 만큼 현 정부 들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결자해지(結者解之)를 해야 함.

북한인권법에 의하면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제7조). 정부가 북핵 위기 타개를 위해 정상간 남북대화를 한다면 북한과의 인권대화 기회를 만들어 송환된 탈북자 처벌문제 등 인권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도록 했어야 하는데 2018년 3차례 남북회담에서 이를 외면한 것은 잘못.

또 북한인권법에 의하면 재중 탈북민 보호가 소홀히 되어 있는바[32], 그 보완과 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4) 국제사회와 공조

정부와 시민사회는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노력함은 물론,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책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방안을 마련해야 함.

제60차 유엔총회 결의안(A/RES/60/251) 제8조 후문에 의하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d)할 수 있는바[33], 중국 등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을 문제삼는 세계적 청원운동을 펼치는 것도 고려할 필요.

32)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8. Decides that....the General Assembly,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may suspend the rights of membership in the Council of a member of the Council that commits gross and systema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발제 및 토론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대책

김석우
(前통일부차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대책

김석우(前통일부차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1. 대량 탈북사태 발생

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공산주의 70년 역사는 실패로 종결

- 1989년 동유럽 공산권 붕괴와 1991년 소연방의 해체
-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으로 돌파구 마련

나. 북한 김씨 3대 정권은 개혁·개방 거부하고 체제생존을 추구

1) 철저한 외부정보통제 - 자유화 물결 차단
2) 참혹한 폭압통치(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정치범수용소 강화)
   -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
   - 그 책임자는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 대상

다. 경제 파탄과 식량부족

- 적대계층·동요계층에 대한 식량 배급중단
- 300만 명 대량아사사태 발생 (독재정권하에서 일어나는 전형적 사례)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과 대량탈북 시작

2. 한국 정부의 적극성 부족

가. 한국사회 자체의 인권인식, 1987년 정치민주화가 전기

- 국제인권 A규약, B규약에 북한보다도 늦게 1990년 가입
-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인권문제에 수세적
  · 사회 전체의 인권의식 변화도 느려

나. 게다가 좌파 정치인들의 이념 편향이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방해

- 북한인권법 제정에 걸림돌, 12년 만에야 국회 통과.
  - · 아직도 법상 주요기관인 북한인권재단 출범 방해
-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주민들의 인권유린을 외면
  - · 자칭 민주화투사가 나치정권의 유태인 학살을 비호하는 격
- 북한인권운동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조성 시도 (‘배신자’해프닝)

다.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비겁한 ‘무 외교’의 다른 말

- 강제송환의 국제법 위반을 추궁하는데 소극적
  - · 중국 정부의 ‘국제법상 의무 이행’ 을 요구하기보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호소하는 저자세
- 결과적으로 강제북송문제해결의 지연 책임 면하기 어려움
  - · 중국이 밥 먹듯이 국제법 위반하도록 조장하는 간접효과
  - · 강대국 이웃의 작은 국가는 “rule” 이라는 수단이 가장 효과적

라. 시민사회조차 중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 초기 강제북송의 국제법 위반을 추궁하는데 자신감 부재
- 재중 탈북자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엄두도 못내고, 주변적 구출사업에 치중

3.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과 국제법 위반

가. 탈북민을 ‘난민(refugee)’으로 인정 거부, 연간 약 5천 명 강제송환 추정

- 강제송환 우려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
- 특히 여성들의 심각한 피해
- 18. 중국인과 사이에 자녀 가진 여성 탈북자를 방면하여 남편에게 보낸 사례 보고됨.
  - · 탈북여성이 북송되어 생긴 무국적 고아 수만 명이 중국 지자체에도 부담

나. 중국이 강제북송을 계속하는 이유

- 강제북송 않고 난민으로 체류권한을 인정하면
  순식간에 난민행렬이 이어질 것 - 이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의미
  - · 북한의 정권 붕괴는 한반도의 자유통일로 이어지고
  - · 미국의 영향권이 두만강 · 압록강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
- 북한 정권 붕괴로 중국 국가안보상 ‘완충지대’ 상실을 우려
  - · 북한정권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와 식량도 지속적 지원
  - ·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 않고, 경제적 이주자라고 억지

· 통일 한반도가 중국 편에 서지 않으면 거부 입장 유지할 개연성

4. 이명박 정부 이후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공식 요구

가. 08. 8. 25. 이명박대통령 후진타오 주석에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공식요청

- 02. 8. 2.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 탕자쉬엔(唐家璇)에 북송 중단 요청
  - · 그후 중국 측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 에 따라 처리 방침표명
- 언론 등에 노출될 일부 경우 인도적 고려, 그러나 대부분은 북송 강행

나. 12. 2. 14. 한국 NGO들 중국대사관 앞 시위 100일 이상 지속

- 박선영 의원 12일간 단식데모
  - · 국내외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충격적 파장
  - · 중국의 국제법 위반도 부각
- 12. 3. 22.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없이' 채택
- 13. 3. 21.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없이 채택
  - · '유엔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
- 14. 2. 16. 북한인권조사위원회(마이클 커비 위원장) 1년간 조사결과를 종합보고서로 유엔총회에 제출
  - ·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 시정을 요구

5. 미 · 중 패권경쟁의 시작

가.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 패권추구에 대한 트럼프의 견제

- 중국 중심의 1극 체제가 가능할까?
  - · '룰' 을 무시하는 거대 중국은 국제 평화에 문제
  - · 주변국은 조공시대의 재현 가능성을 경계
-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九段線) 영해화·산호초의 군사기지화
  - · 미국 중심 주요국가 전통국제법상 '공해의 자유' 수호 추진
- 실질적 미·중 패권전쟁 돌입
  - · 중국의 '룰' 무시 국가중심 경제패권추구에 제동
  - · 무역협상으로 지적재산권과 룰을 지키는 공정한 무역을 추진

나. 트럼프의 '하나의 중국' 부정

- 대만을 나라(country)로 인정하는 발언
  - · 첨단무기 수출 허가도 병행

-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제정에 대한 대규모 항의
  - 19. 6. 9. 100만 홍콩주민 거리데모 (홍콩 인구의 1/7)
  - 신장지역과 티베트의 분리 독립운동에도 파급효과
-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는 미국이 사용할 카드 중의 하나

6. 탈북북송 저지를 위한 대책

가. 시민단체의 각성과 적극 대응 다짐

-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모드 전환
- 국제적 연대 강화

나. 한국내 좌파 인사들의 북한주민과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외면을 고발

- 북한 독재정권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비판

다.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이 송환금지(Non-refoulement)국제법 위반임을 경고

- 국제사회에 계속 고발
- 톈안먼사태 30주년(19.6.4.) 한국 지식인들 최초 중국대사관 앞 집회
  - 진상규명 등 요구

라. 트럼프 정부에게 강제북송문제를 미·중 교섭에 의제화해 주도록 요구

- 미국내 NGO들의 중국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를 강화
- 중국의 탈북민 북송을 강행하는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제재 요청
- 트럼프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북송과 같은 국제법 위반을 중국의 패권추구 저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7. 결어

가. 인권의 보편성과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

- 나치 만행을 교훈으로 유엔헌장체제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 1648년 베스트팔렌체제상의 국가주권 절대원칙에 변화 초래
- 유엔은 국제인권장전 (세계인권선언, 1966년 A규약과 B규약)과 아울러 6개 주요인권조약을 각각 채택하고, 1951. 난민협약과 1967. 난민의정서도 채택.
- 주요인권조약 이행위원회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의 협약위반 지적
  - 중국의 경제적 난민 주장은 넌센스

나. 중국의 국제법 준수를 권리로서 요구

- 중국은 안보상 '완충지대' 상실을 우려
  - · 조약상 의무와 국제법 위반 계속
  - · 그 뒤에서 매년 북송되는 5천 명의 인권유린은 암흑 속에 잠겨
- 중국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유린 방조행위를 계속 거명(naming and shaming) 압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

다. 통일과의 연계

- 중국이 북한을 비호함으로써 받는 국익 손실이 북한정권을 지탱해서 얻는 이익보다 클 때, 한반도 정책에 근본적 결단
- 그것은 한반도 통일,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에 연결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 및 토론

강제북송 탈북자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제북송 탈북자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

□ 강제북송 중단이 왜 중요한가?

70년에 이르는 김씨 왕조의 장기집권은 한민족의 수치이고 국제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심리전이 북한체제를 흔들게 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북·중(北中)국경이 붕괴되면서 수십만의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다. 북한체제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 동북지역에 쏟아져 나온 탈북자들을 한국정부에게 데려갈 것을 타진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식량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가 정비되는 것을 도와주었다. 북한은 체제 정비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중국 정부를 통해 중국으로 나갔던 탈북자들을 모두 북송시키는 것이었다. 북·중 국경 국가보위성 취조실, 각종 구금시설에서 탈북 여성들에 대한 반인륜적 성고문과 학대가 자행됐다. 단순탈북자들이 보내지던 집결소나 교양소들은 정치범 수용소 못지않게 가혹한 육체적 고통을 주었고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북한 정권이 변화하지 않고 김정은의 3대 정권에도 인민의 삶은 더 열악해져 탈북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강제북송은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강제북송 자들은 단 한 명도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탈북자 종신수용소에 수용시키기 때문이다.

□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 최후수단은 국경봉쇄와 정보차단

→ 루마니아, 동독 등 북한과 유사했던 구 공산국가나 기타 독재국가의 몰락은 국경이 붕괴하고 대략 탈출이 발생하면서 시작됨.

- 동독의 경우 수백만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서독 정부는 주변국에 동독인의 서독 탈출을 도와 달라고 요구했음. 동독이 무너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 장성택 사건으로 2만 명이 처형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갔지만, 북한 내륙에서는 단 한 명도 탈출하지 못함.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통제가 가능한 곳은 북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대량 탈북이 일어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겨우 3만 명에 불과함.

- 중국 정부가 모든 탈북자에 대해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강제북송하기 때문에 국경봉쇄가 가능함.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은 북한 내에서 그 어떤 반체제 운동도 불가능함.

□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

→ 보수, 진보 정부 모두 탈북자 전원수용 정책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내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함.

- 김대중 정부 초기 50만 이상의 북한주민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이들의 집단 수용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정책이 정당화됨.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국정부에 자국민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북중 협력 차원에서 이 문제 만큼은 북한 손을 들어주고 있음.
-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중국 정부에 강력한 강제북송 중단 원칙을 내세우고 중국을 압박해야 했지만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함.
-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외교부에 중국정부에 잡힌 탈북자 문제를 제기해도 항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 탈북자들을 돕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재단 설립도 중단된 상태임.
- 동독의 인권탄압에 맞서 탈출하는 동독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이 결국 통일로 이어졌듯이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정책을 막지 못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함.

□ 김정은 정권의 탈북자 정책

→ 김정일 시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국경봉쇄와 탈북자 탄압

- 국가적인 통제력을 총집결해 북·중 국경을 원천봉쇄하고 탈북자들을 건네주는 군인들은 적발 시 총살에 이르는 처벌을 시행함.

- 2014년 김정은은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자수운동을 벌이고 용서를 받게 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탈북행위는 반국가적 반역행위로 간주하고 종신수용소에 가두고 있음.
- 중앙 국가보위성의 상시적 검열을 통해 국경 지역 보위성 통제.
- 최신 감청시설들을 들여와 북·중 국경에서의 통신을 차단하고 통제하는데 동원됨.

□ 탈북자 강제북송은 가장 잔혹한 반인륜 범죄

→ 유엔난민기구에 가입한 중국의 유엔법 위반.

- 유엔난민기구의 탈북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며 중국 국내법에 따라 중국으로 넘어온 모든 탈북자를 강제북송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의 명줄을 지탱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일본강점기 때 종군위안부 못지않은 여성인권유린

- 아무런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 북송당하면 죽음에 가까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며 내륙으로 인신매매 당하고 있음. 21세기 문명사회서 발생하는 가장 끔찍한 노예거래에 해당함.
- 중국의 인신매매단들에 의한 탈북 여성들의 처참한 성 유린, 인신매매 당한 곳에서의 학대는 현대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유린임.

□ 향후 미국의 대중 압박수단으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거론되어야!

→ 유엔주도의 경제 제재 이후의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강제북송 중단을 활용해야!

-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 제재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그 이상의 제재를 고려한다면 중국 정부를 압박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현실화해야 함.

- 국경봉쇄와 외부정보 유입 차단은 김정은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인 국가적 핵심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경봉쇄를 무력화시키고 내부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이 선행되어야 함.

- 트럼프가 시진핑을 압박하면서 경제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카드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을 압박해 새로운 대북한 압박카드를 사용하게 만들어야 함.

MEMO

MEMO